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

2. 조치일 : 2022. 7. 22.

3. 조치내용

대상	내 용
기관	개선 1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보호감시인 제도 운영 미흡
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9조의7 등에 따라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내규로 마련하고, 보호감시인*을 선임하고 있으나

*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9조의7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(2021.1.5.)

법령 준수 여부 및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점검 및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교육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

보호감시인의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대상·시기·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, 점검 결과를 공식 문서로 기록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